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양 경 승

제주지방법원 판사

I. 머 리 말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1981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으로 반론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나 사죄광고, 손해배상청구의 어려움 없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언론사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 반론권 제도는 그간 많은 이론과 판례, 중재사례의 집적으로 공고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언론의 양적 성장,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앞으로 우리 언론에 대하여 한층 더 많은 책임과 자기변신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폭발적 증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언론피해구제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고찰과 검증을 거쳐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과 결함을 보완, 개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여 책임언론을 구현하는 일방,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사명을 직시하여 통상적인 언론활동의 자유가 방해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유언론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언론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현행 언론피해구제제도 전반을 성찰,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위와 같은 언론의 양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률만의 입안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소견이 천학비재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이상론에 치우쳤다고 비난 받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의 언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임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언론계와 법조계의 많은 공론이 제기되어 보다 훌륭한 제도가 탄생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II. 현행 언론피해구제 관련 제도의 현황

1. 민사적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

- 민법 제 750 조, 제 751 조 제 1 항
- 언론기관은 물론 모든 개인과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됨
-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을 요하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없음

나. 원상회복조치

(1) 정정보도

- 민법 제 764 조(정정보도에 국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의 한 내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요함
- 반론보도와와의 구별 :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증명될 것을 요함

(2) 반론보도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6 조 내지 제 20 조, 방송법 제 41 조,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 조의 3, 제 8 조의 4
-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음
- 정정보도와의 구별 : 반론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지 않는 한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증명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행사가 용이하나 구제의 정도는 정정보도에 비해 다소 미흡함

다. 사전금지(가처분)

- 민사소송법 제 714 조 내지 제 723 조(민사상의분쟁 일반에 관한 포괄적 규정임)
- 당해 표현물의 편성,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법익 침해가 우려되면 족하고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필요는 없음
-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므로 그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2. 형사적 구제수단

-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 조 내지 제 310 조), 모욕죄(형법 제 311 조), 신용훼손죄(형법 제 313 조),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 조)
- 국가적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은 간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함

3. 구제절차

가. 손해배상, 정정보도, 사전금지, 형사적 구제

- 법원의 소송절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음
- 다만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중재(조정)를 신청할 수 있음

나. 반론보도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필수적) → 법원의 소송
- 중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법원의 소송절차는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론이 필수적이며, 다만 입증의 정도가 소명으로 완화되어 있음

III.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 관련 법령의 분산으로 통일성 결여

- 구제수단별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별로 다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 법 기술적으로 관련 영역에 대하여는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을 함이 바람직하나 법령의 분산다기화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규율이 곤란함
-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하나의 언론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쌍방의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의 유기적 · 통일적 해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꾀하여야 함에도 현행과 같은 분리규율 방식에 의하여서는 종합적 운용이 불가능함

2. 제도에 대한 충분한 규율 미흡

- 사전금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도 언론피해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부분 사항을 개별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절차의 확실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움
- 선거 관련 보도의 구제에 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기하기 어려움
- 그 밖에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간단하고, 아예 중요한 규정이 빠져있는 등의 결함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음

3.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위축 우려

-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언론의 양적 성장으로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배상액의 무제한적인 상향이 예상됨
- 그러나 언론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을 만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에 못 이겨 언론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통상의 언론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 존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그 같은 안전장치가 충분치 못한 실정임

4. 소송 외 분쟁해결 장치 및 전심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의 기능 미흡

- 그 동안의 운용 결과 중재절차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의 중재절차 내에서의 종국적 · 일회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부득이 함
- 그러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진상을 밝혀 줄 경우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소극적인 합의권유 기능에서 벗어나 분쟁 당사자들에게 설득력과 권위를 높여줄 수 있음에도 현재 증거조사 기능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함
- 현행 제도상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알선 · 권고 기능인 조정권한만을 갖고 있어 중재절차 내에서 당사자 쌍방의 중재합의에 의하지 않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적절한 기능을 행사할 수 없음(직권중재결정은 애당초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으로써 불복이 가능하여 분쟁의 일회적해결기능이 미흡함)
- 중재절차는 궁극적으로 소송의 전심절차기능을 가지므로 소송절차와 유기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상으로는 직권중재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기만하면 직권중재결정은 효력을 잃고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므로, 절차의 번잡과 제소기간의 도과로 피해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재절차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함이 있음
- 또한 중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소송절차에서 이용하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과 비용절감을 꾀하고, 중재절차에서 분쟁의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 심 소송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제 2 심 소송절차로 이행케 하여 중재절차의 내실과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법원의 소송절차도 지나치게 경직적임

IV. 입법론적개선방안

1. 관련 법률의 통합

-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언론피해구제법" 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임
 - o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사전금지청구권 등 제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흡수하여 통일적 종합적으로 규율하여야 함
 - o 이로써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등 절차를 간명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유사한 구제 수단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 변환을 통해 분쟁의 해결가능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
- 다만 전문 언론기관으로서 계속성과 함께 어느 정도의 규모와 인적 ·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야기된 소규모 분쟁에 대하여는 통합법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므로 민법규정을 조치하여 통합법의 규율 밖의 분쟁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열거는 현행과 같은 조문 나열식을 지양하고, 절차의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장, 절, 관으로 나누어 규율함으로써 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법 운용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2.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

가. 자율적 책임확보를 위한 사내 옴부즈맨의 설치

- 언론사고 역시 사전검색을 통한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전검색 기능은 그 성질상 언론사의 자율적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그러면서도 언론사에 예속되지 않은 반독립적 기관으로서 사내 옴부즈맨을 필요적으로 두는 것이 요청됨
- 사내 옴부즈맨은 언론현상과 법률제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하므로 그 자격을 5년 이상판사,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과대학 교수직에 있었거나 5년 이상 언론현업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되, 그 직무상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언론사의 소속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할 것임
- 옴부즈맨에 대한 언론사의 부당한 간섭과 변칙적인 운용을 막기 위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그 성명과 자격, 지위,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옴부즈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하여야 함

나. 언론의 면책 범위 설정

-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손해배상의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언론 외 공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함
- 이로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보도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적법성을 인정해 온 판례를 입법으로써 수용하여야 할 것임
- 공소 제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범죄사건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되,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당해 피의자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금지할 것이 요청됨

다. 손해배상책임의 완화

(1)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당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임
- 위 기간은 다른 민사상 채권에 비해서는 단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여전히 길어서 안정적인 언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2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간명을 위하여 피해자가 당해 언론사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한 때에만 시효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청구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중재절차에 나아가지 않거나 조정·중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하나의 언론보도에 의하여 복수의 피해자들 상호간에 친족관계 등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이들이 각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시효기간을 각별로 진행하면 언론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같은 피해자들 상호간에 생계를 같이 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1인에 대한 시효완성의 효과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감경.

-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나,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 감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피해자 1인 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액은 10억 원, 정신상 손해의 배상액(위자료)은 1억 원을 최고 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위 한도액 범위 내의 손해라고 할지라도 당해 언론보도의 목적과 경위, 언론사와 언론인이 기울인 주의의 정도 및 그 자력, 피해자의 신분 및 그 재산정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손해액을 상당한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언론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언론사는 그 사업의 성격상 자산규모가 영세하여 언론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액 마련이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언론사는 피해자의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장래의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같은 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잠정적인 보완수단으로서 공제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 보험가입 금액이나 공제기금 출연금은 최소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으므로, 당해 언론사의 자본금 또는 자산 중 다액의 10분의 1로 하되 그 최고 액은 30억 원, 그 최저 액은 1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 공제기금은 독립적 감시기관인 중재위원회가 관리하여 피해자가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지급으로 인해 당해 언론사의 출연금이 위 최저 한도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보험가입이나 공제기금의 출연은 영세한 언론사에게는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를 강제할 경우 언론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기금을 출연한 때에는 방송시설이나 인쇄시설 등 언론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3.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상대화

-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원래의 보도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배치,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 보도내용을 수정, 원상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종래와 달리 정정보도를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그리하여 정정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피해자가 증명한 때에 언론사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외에 원상회복 수단으로서 철회, 취소, 불유지 등은 그 동안 정착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구별이 어렵고 자칫 그 개념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당해 보도를 안 날로부터 1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6월도 길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3월로 단축하여도 무방할 것임

4. 언론중재절차의 강화

가. 조정 대상의 확대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이 역시 모두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럼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분쟁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양보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상대적인 만큼 피해자는 그 청구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거조사 기능의 강화

-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치 절차로서의 심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증거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서증, 인증, 경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되, 중재절차의 비강제성과 유연성,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재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중재기일에 현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나 그로써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의 도입

- 현행 법제도상의 언론중재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중재가 아닌 조정으로서 알선이나 권유와 같은 소극적 기능만을 갖고있어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중국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o 이 제도는 당사자간에 분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권위와 증거조사 기능을 가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는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음
- 그러나 이를 강제할 경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 쌍방이 미리 중재결정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받기로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집행절차의 간소화

- 현행법 상으로는 중재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가 간주되거나, 직권중재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중재조서의 정보 등을 제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고, 법원은 다시 해당 중재부에 중재조서 등의 등본을 송부촉탁하여 양자의 일치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집행문을 부여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그 집행문 부여를 각 중재부에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감독은 법관인 중재부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강화

가. 조정 전치주의의 확대

-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역시 중재절차 내로 흡수 통합하는 이상 이들에 대하여도 법원의 소송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나.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와 소송절차로의 이행

-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소 제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건을 법원의 소송절차로 이행케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실효성과 권리구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소송구조상 행정소송 형식을 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원고,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야 함
- 또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에서 각하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무조건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을 상실케 함은 낭비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원래의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소송 대상의 확대

- 현행 법상 중재기일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불출석하였으나 부득이 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 중재신청의 취하나 합의 간주의 불이익을 면하게 되는 바, 중재부가 기일 속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로 수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즉시항고로써 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중재부의기각결정 정보를 송달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함이 바람직함
-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현행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역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당해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 처분의 방법으로는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야간과 일요일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소송절차의 개선

(1) 관할의 조정

- 현행과 같이 모든 소송을 제 1심부터 거치게 하는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전심 절차인 중재절차의 호응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직권중재결정, 기일 속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재결정에 대하여는 곧바로 제 2심인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도록 하여 심급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심리절차의 통합

- 현행 법상으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은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제소하거나 심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절차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병합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도 이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함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이 소송절차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는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하고,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사건 접수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만을 손해배상청구와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반드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가처분절차와 마찬가지로의 신속한 구제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선거 관련 보도의 시정청구 제도개편

- 선거에 임하여서는 후보자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당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시간이 촉박하고, 그 파급효과를 신속히 차단할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특성상 통상의 구제절차와 다른 예외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특성상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통상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권에 한하여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함
- 그 특칙으로서는, 중재신청 기간을 보다 단기간으로 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언론사로 하여금 곧 반론보도를 하게 하되, 그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동시에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것 등이 가능함
- 또한 현행 법상으로는 방송에 대한 시정청구는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구제절차의 통일성과 중재 절차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 역시 중재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제 29 회 행정고시 합격, 제 31 회 사법고시 합격, 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서울 민사지법판사
- 저술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 외 다수
- 현재 제주지방법원 판사